



기업실정에 따른 차별적 특허관리 방안 연구(1)



최 병 규

韓京大學校 法學科 教授

목 차

I. 머리말

II. 특허관리의 단계와 문제의식

III. 특허관리의 최근 동향

IV. 초기단계 특허관리의 효율화방안

V. 도입단계

VI. 특허관리와 컴퓨터소프트웨어

VII. 전략적 특허관리

VIII. 맷음말

<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

I. 머리말

뉴밀레니엄세계를 앞에둔 작금의 상황은 세계 경제에 종전과는 다른 강도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 경쟁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발전에 있어 선진 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적재산의 생산과 교환'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개념, 범위 및 속성도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적 장치와 이의 유지에 필요한 정책 수단들 또한 지식기반 경제하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보호·유통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과 국가전체의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¹⁾ 이것은 결국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IMF사태를 겪고 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R&D 부문을 대폭 감소 또는 정리하는 등 지적재산의 주요 발원사업부문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결과 1998년도에는 1997년도에 비해 국내 산업체재산권 출원 량이 78%로 격감하였다가,²⁾

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 연구," 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과제최종보고서, 1998.1., 1쪽 참조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³⁾ 과거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각⁴⁾도 설득력이 있었으나, 역설하면 국내기업들의 대부분은 R&D 및 지식재산권(특허권)을 기업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식재산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특허관리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견수경쟁 위주로 특허의 양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한 대기업을 제외하곤 특허관리의 역사도 일천하여 효율적으로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탓도 있다.

특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우수특허를 확보하여야 하고 보유특허에 대한 적극적 활용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특허관리의 단계별 차등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한다.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초기단계와 도입단계에 있는 기업체들이 특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다. 즉, 그러한 기업체의 내부여건 및 외부의 현실적 환경 하에서 초기·도입단계의 기업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I에서는 특허관리의 기본적 개념 및 최근 국내에서 특허관리 효율화 연구결과 그리고 미국, 일본의 특허 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IV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초기단계특허관리의 최근 개선방안들을 점검한다. 그리고 V에서는 중간단계인 도입단계까지의 특허관리 실무상 장애요인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을 논한다. 그 밖에 컴

퓨터프로그램과 특허관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면서 VIII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II 특허관리의 단계와 문제의식

벤처기업이 IMF체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경제구조의 전실회를 이끌 수 있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주요 정책도 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등록과 신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맞추고 있다.⁵⁾ 결국 미래 한국사회의 주요 기업형태로는 벤처 내지는 중소기업 위주가 될 것이다.⁶⁾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꽂을 피우기 위한 기술창업이거나 대학, 연구소 또는 대기업 등에서 특정사업, R&D 결과를 창업하고자 하는 직원을 통해 지원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창업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의 시발점인 아이디어나 R&D 결과의 독창성, 사업성 등이 성공요인의 주요변수가 된다. 문제는 이 아이디어나 R&D 결과를 그 기업 입장에서 적법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업의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근간으로 WTO체제, IMF라는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최근 2~3년간 특허청의 출원,

- 2) 정연용, “전략적 특허관리(1)”, *발명특허* 1999.2.
- 3) 1999년 1월부터 5월까지 산업재산권출원건수가 1998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장·상표등록출원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7월 5일, 14쪽; 특허와 상표 제480호(1999.8.5), 1쪽. IMF 이후 출원 위축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에 대하여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출원전망과 특허관리 특별회계의 세입불안정에 대한 대책, 1998.11. 참조
- 4) 장원호, IMF시대의 특허관리전략, *발명특허* 1998.8.에서는 IMF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되었던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 5) 정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따르면 9,900여개에 이르는 전국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1실험실 1창업 운동을 전개하여 2002년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1만개 벤처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현재 100여개에 불과한 창업보육센터를 2002년까지 각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최소 1개이상의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500개로 확대하고 1만 개의 벤처기업을 보육하겠다고 보고하였다(국정개혁보고회의, 1999.3.31).
- 6)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전략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이기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전략,” *발명특허(한국발명진흥회)* 1999년 10월호, 22쪽 아래 참조



등록, 관납료의 급격한 인상에 기인한 특허관리 예산문제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내기업체의 경쟁력 요인인 특허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기존에도 시도된 적이 있으나 대부분 특허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된 기업체들에게 유용한 내용이어서 특허관리부서 또는 특허전담자조차도 없는 중소 벤처기업이나 어느 정도 특허관리는 하고 있으나 여건상 박차를 가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도입이 곤란한 방안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기준 연구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특허관리의 업무를 검토해 본 다음, 특허관리 수준 내지는 성숙정도를 감안하여 특허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효율적 특허관리 방안⁷⁾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업체의 특허관리를 표1처럼 5단계로 분류하여 검토한다.⁸⁾

표1: 특허관리의 분류

	특허관리의 주요내용	기업사례
단계0 : "부재단계"	담당자 없이 발명직원이 직접출원, 등록	국내 벤처, 중소기업
단계1 : "초기단계"	담당자는 존재, 출원등록등 단순관리만 수행	국내 중견기업 대부분
단계2 : "도입단계"	특허부서 설치하고 특허교육, 국내 대기업 상당수	분쟁처리등 전담
단계3 : "정착단계"	특허부서가 R&D, 사업방향 관여, 사내 특허마인드 정착	일본 대기업 상당수
단계4 : "사업단계"	특허부서가 경영, R&D부서와 연계, 특허활용 수익화	미국 대기업 상당수

III. 특허관리의 최근 동향

1. 특허관리의 기본⁹⁾

특허관리는 기업의 연구인력의 발명활동 관리, 특허

출원, 권리화를 위한 관리, 특허권의 활용 및 침해에의 대응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리업무 및 이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업무를 의미한다.

기업의 특허관리의 기본은 그 기업의 사업전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특허권의 활용을 통해서 유리한 사업전개를 하든지 타사와의 크로스라이센스¹⁰⁾에 의해서 사업전개의 자유도를 확보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의 실시허락에 의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특허관리는 연구개발 및 사업전개와 관련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요즘의 특허관리는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특허만을 독립해서 관리하기보다 상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도 케이스별로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연구원들이 "특허mind"를 갖고 발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발명과정에서도 수시로 특허담당자가 회의 등을 통하여 특허성 및 경제력 있는 우수한 발명의 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완성된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화를 위한 출원전략을 설정하고, 출원의 절차진행 중에도 권리화를 위하여 관계자들의 계속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허권의 탄생까지 기업은 많은 금전적, 인적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그 특허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타사의 특허에의 침해에 대해서도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허관리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면, ① 특허전문 인력의 육성 및 특허교육 ② 특허정보관리 및 제공

7) 이에 대한 연구로는 특히 정연용, "단계별 특허관리 방안", 벤시연구, 1999.1. 참조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1994에서 이미 단계별로의 분류가 있었다.

9) 이종일, "양면적 특허관리시대를 열기 위하여(2)", 발명특허, 1996.6.

10) 이에 대하여는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제6전정판, 육법사, 1999, 257쪽 참조. 크로스라이센스의 독점규제법상의 취급에 대하여는 최병규,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지식재산 21(특허청) 제56호(1999.9), 52쪽 아래 참조

③ 직무발명 제도의 운용¹¹⁾ ④ 발명상담 및 발굴 ⑤ 출원, 등록 등의 권리확보 업무 및 유지관리 ⑥ 특허 침해 감시 및 분쟁처리¹²⁾ ⑦ 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스 계약 ⑧ 업무전산화 및 업무표준화 등을 들 수 있다.

2.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최근 논의들

1) 연말 출원집중 현상의 방지¹³⁾

국내 대기업이나 연구소들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가 특허출원의 연말집중 현상이다. 이는 실속없는 전시행정의 산물로서 기업·연구소·특허사무소·특허청 모두에게 심각한 각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특허출원 의뢰의 연말 집중현상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질적으로 우수한 명세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처리한 명세서는 선행기술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어렵고, 발명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하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특허담당부서의 명세서 검토기간도 촉박하므로, 명세서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으로 떨어진 명세서는 기재미비 등의 이유로 중간사건의 처리를 매우 어렵게 하며, 만일 담당자가 바뀌거나 한 경우, 재검토 및 재작성하는 과정이 최초 명세서 작성보다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청구범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이, 현저하게 축소된 청구범위가 작성된 경우, 이러한 청구범위의 보정은 요지변경일 가능성이 많은 특허출원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고,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나 미국의 경우 부분계속출원(CIP)등의 추가 비용의 발생요인이 된다.

결국 특허출원의뢰의 연말 집중현상은 추후에 많

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허권을 하여 받더라도, 제한된 권리밖에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 모든 문제점의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연말 집중현상은 현실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자각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발명적 가치가 낮거나 방어출원 목적인 발명은 과감히 공개기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연말출원에 의한 명세서작성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방안, ② 연중에 출원의뢰된 사건을 연말에 출원의뢰된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가산점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연말 출원시 보상금 혜택 배제 등), ③ 연말에 출원의뢰된 건에 대해 사건의 일부를 차기년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출원하게 함으로써 심도있게 분석한 후 출원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

2) 공개기보제도의 활용

공개기보제도는 발명의 성격이나 가치면에서 출원하여 권리화하거나 사업화할 수준은 못되도 출원을 통해 목적(방어)을 달성해 왔던 것을 현행 공보의 내용 형식을 갖춘 기보를 발행함으로써 거품성격을 떤 단순 방어목적의 출원을 줄여 특허관리 비용을 절감(출원비용의 1/8수준)하면서도 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개기보를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발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기보에 게재되는 발명의 평가기준요소로서는 신규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거나 미약한 것, 진보성이 낮거나 보통인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보통인 것, 연

11) 이에 대하여는 특히 최병규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하)”, AIPPI Korea Journal 1999.4., 5쪽 아래 참조

12)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는 특히 최병규, 특허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 AIPPI KOREA JOURNAL(한국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1998년 2월호(제2권 제13호), 6쪽 아래; 김홍규/표호건, 산업체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해의 효과적 구제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98-3 참조

1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 연구” (전자통신연구원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1998, 81쪽.



구노력의 정도가 보통인 것, 기술이전 가능성에 없는 것¹⁴⁾ 등을 적용할 수가 있다.

3) 명세서의 질적향상 대책¹⁵⁾

특허명세서는 기술문헌으로서 또한 권리문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명자의 기술적 사상이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서 그 권리 범위를 폭넓게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부실한 명세서는 거절이유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또 다른 비용요인을 발생시키며, 보정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실하게 작성된 명세서는 경쟁회사에게 중요한 기술정보만 알려줄 뿐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특허출원인에게는 기술적 범위를 나타낸 권리서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명세서를 작성하는 자는 가능한 넓은 기술적 범위를 나타낸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명세서는 향후 특허권의 라이센스 체결이나 양도 등의 행위시 권리의 범위와 권리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특허명세서가 특허부서 및 특허사무소 담당자도 이해하지 못한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기의 직무발명신고서나 아이디어 제안서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현 특허업계의 높은 이직률을 감안할 때, 그 사이에 발명자나 최초 명세서 작성자가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세서는 최초 작성시부터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범위가 협소하게 작성되는 경우, 경쟁업체에서는 청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다양한 실시 예를 고안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만 경쟁업체에게 제공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경쟁업체

에서는 명세서의 부실한 면을 이용하여, 각종 특허권 무효소송이나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여 예기치 못한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 ① 발명자의 발명경력을 반영한 선별특허교육, ② 특허담당자, 특허사무소직원에 대한 기술세미나 참여강화 ③ 발명자, 심사관, 특허사무소 직원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 강화, ④ 우수특허명세서 작성사례 발표회 및 교본발간 등이 필요하다.

3. 미국기업들의 특허관리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무역수지의 호전을 피하기 위한 pro-patent 정책을 구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이윤추구의 전략을 피하는 등에 힘입어 미국기업들의 상당수가 특허관리 자체를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즉, 대기업에서는 본사에 “지적재산경영실” 또는 “지적재산법무본부” 등의 조직을 두고 기술부문과 법률부문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허로 알티수익이 기업 전체이익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pro-patent 정책의 배경은 높은 노동비용에 따른 제조업의 쇠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초기대책으로 노동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 현지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기업의 개발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해외 노동력의 질이 문제되어 제품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미국 산업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특허등의 지식재산권은 타국의 신제품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제품의

1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 연구,” 25쪽.

1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 연구,” 39쪽.

원료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신제품개발에 대한 대가와 제품생산의 중요한 원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미국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조기 및 강력한 권리화를, 미국 기업들은 우수발명에 대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미국의 이윤을 위하여 미국특허청과 기업들이 공조하고 있다.

4. 일본기업들의 특허관리

일본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4조2천 억 엔의 기술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4천억 엔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통계이다. 일본의 적자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 미국은 15조7천억 엔의 기술무역흑자를 기록했다.¹⁶⁾ 그 후 일본은 한층 더 특허를 중시하는 정책 (pro-patent)으로선회하였다.¹⁷⁾

이는 전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의 양태가 과거의 선협상 후소송에서 선소송 후협상으로 공세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일차로 특허료 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0년대 미국과의 특허분쟁 경험과 1990년대에 축적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21C Pro-Patent시대”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

부 및 민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특허취득의 목적도 단순한 방어차원에서 시장독점, 타사견제, 로얄티 수입등의 공격적 차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¹⁸⁾

즉, 미국 및 유럽에 대해서는 특허료 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입장이지만 그들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권을 무기로 소위 크로스-라이센싱을 통하여 기술료지급을 감행가는 수세적인 입장을 전개하는 한편, 한국 등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는 미국과 같은 공세적인 특허관리를 통하여 기술료 등을 요구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¹⁹⁾

일본기업의 특허관리에 대한 특징의 하나는 그룹 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자회사의 설립이다.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전문가를 그룹전체로 공유하여 그룹의 지적재산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 통신회사인 일본전신전화(이하 “NTT”)의 경우, 1976년부터 기술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가 설립되었으나, 1990년에는 지적재산업무를 추가하면서 회사이름을 지금의 NTT-AT로 바꾸었다. 그러나 NTT-AT에서는 점점 지적재산업무의 비중이 높아지자 지적재산 사업부문을 대폭강화한 TIPS(Technology Transfer &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를 발족하게 된다. TIPS의 지적재산사업원칙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²⁰⁾

16) 일본 특허청, “아제부터는 일본도 특허중시의 시대,” 1997. 2.

17) 구대환, “특허청의 지식경영”, 지식재산21, 1999.3.

18) 김태완, “민관 공동 기술사업 협력기구의 필요성”, 기술관리, 1998.12.

19) 이종일, “양면적 특허관리시대를 열기 위하여(1)”, 발명특허, 1996.5.

20) 우선 NTT-AT의 지적재산 업무는 다음과 같은 원칙 내지는 배경을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NTT 그룹기업 공동의 지적재산관리 지원의 집중화를 목표로 하여 지적재산 전문가의 확충과 관리기술을 더욱 더 강화한다. 그리고 각 그룹기업에 대응하여 지적재산업무를 확실히 또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적재산 전문가 팀워크체제의 충실 및 관리시스템 등의 틀을 도입하고 정비한다. 이를 위하여 NTT-AT의 지적재산 사업부 인력구성은, 이학박사 1명, 공학박사 6명, 변리사 2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분야를 커버할 수 있고, 또한 지적재산업무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는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60명이다. 기술분야와 지적재산분야의 전문지식을 고루 갖추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당 사업부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사업부에서의 지원서비스로는 연구 테마나 개발제품에 관련되는 다른 사람의 출원정보나 권리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대상 및 개발대상의 확실한 설정·재검토 및 그 성과의 우선순위 확인이나 사업화에 있어서의 안전성의 확인·확보 등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 권리조사서비스(특허, 상표조사 등) 및, 각 그룹 기업이 귀중한 연구개발성과를 비롯하여 지적재산으로 확실하게 유지·활용하는 지적재산관리지원서비스(특허, 상표의 출원에서 권리취득·유지의 사무관리지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라이센스 지원 등), 그위에 특허 SDI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비스 등 의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지적재산사업의 현황과 금후의 전망”, NTT기술저널, 1998.7.